##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66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김한규·박정현·김태년

양부남 · 장철민 · 김영환

진선미 • 이건태 • 서미화

박민규 • 이소영 • 이연희

이원택 · 최민희 · 손명수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시 시·군을 폐지하여 현재까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사무 이양과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 치를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로 도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됨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과 행정시 구역 단위 주도적 업무 추진이 제약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제주시민들의 생활권과 역사성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행정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기존에 자리잡힌 생활권, 관광객들에게 알려진 제주시, 서귀포시라는 브랜드 가치, 저출생·고령화 해결책으로 비수도권의 메가시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그 관할구역은 기존의 행정시의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 도에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 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 명칭	관할구역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좌읍, 조천읍, 한림읍, 애월읍, 우도면,
	한경면, 추자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
	동, 화북1동, 화북2동, 삼양1동, 삼양2동, 삼양3동, 도련1동,
	도련2동, 봉개동, 아라1동, 아라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
	1동, 용담2동, 용담3동, 오라1동, 오라2동, 오라3동, 연동, 노
	형동, 외도1동, 외도2동, 내도동 이호1동, 이호2동, 도두1동,
	도두2동, 회천동, 용강동, 오등동, 영평동, 월평동, 도평동,
	해안동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동홍동, 호근동, 서홍동, 중문동, 서귀동, 법환동, 상효동, 하

효동, 신효동, 보목동, 토평동, 서홍동, 회수동, 대포동, 월평 동, 강정동, 도순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 영남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주특별자 치도지사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이하 "신설시"라 한다)의 시장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각각 실시한다.
  - ② 신설시의 의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의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 일에 각각 실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별로 "해당 신설 시"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

- 법」 제24조의3에 규정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 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신설시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도의회 또는 신설시 의회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 및 제10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본다.
  - ② 제주특별자치도 신설시의 시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에게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주특별자 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 각 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 이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조례·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나 규칙은 신설시의 조례나 규칙이 각각 제정될 때까지 해당 조례나 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 중 법령에 따라 신설시의 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각각 제 2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신설시 또는 신설시의 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신설시의 조례나 규칙 제정을 위하여 행한 각종 절차 등은 신설시와 신설시의회에서 진행한 절차 등으로 보며, 그 효력은 신설시와 신설 시의회에 귀속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나 전부를 관할 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각각 신설시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7조(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소속의 공무원은 각각 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신설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소속으로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신설시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공무원 채용사무는 각각 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신설시가 승계한다.

제8조(읍·면·동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읍·면·동(洞)은 각각 제2조에 따른 관할 구역에 속한 신설시에 설치된 읍·면·동(洞)으로 본다.